

# 고중세문헌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고중세문헌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연구소는 고전문헌의 선진 미래를 위한 현대적 탄생과 신학 및 인문학의 연구 역량 강화, 국책 사업 수주를 통한 연구 사업 활성화, 각종 번역 고전의 출판을 통해 대중 보급 사업, 나아가 제 학문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(이하“대학교”)라 한다)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외 고전 번역 및 출판
2. 국가 지원 번역사업 수주 및 일반 사회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수주
3. 관련 전공서적 및 자료집 발간
4. 학술지 발간 및 국내/국제 세미나 개최 (년2회)
5. 기타 본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 직

**제5조(조직 및 기능)** 연구소는 국가 지원의 고전 번역 연구 사업 유치와 번역물 출판 지원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직과 관련한 분야를 둔다.

1. 연구과제 발주분야 : 국내외 전문 번역사업 참여와 수주를 위한 노력
2. 번역 및 출판분야 : 고전 문헌 번역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
3. 대외협력분야 : 교내외 관련 연구소와 협력 방안 연구, 국내 저명 교수 및 연구자와 협력 공동연구, 관련 사회단체 및 교회등의 기관과 상호협력·교학협력 방안 모색 및 출판물 보급판매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시행

## 제3장 임원 및 연구원

**제6조(임원)**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소장 : 1명
2. 부소장 : 1명
3. 간사 : 1명
4. 감사 : 1명
5. 분과장 : 3명

- 제7조(임원의 임무, 임면, 임기)**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-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간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,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년 1회 이상 연구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⑤ 분과장은 각 분과의 연구사업과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,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구원)**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원 박사후연구원,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“연구원임용규정”에 준용한다.

## 제4장 위원회

- 제9조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맡고, 부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간사, 감사, 각 분과장 등 임원과 연구원, 교내외 전문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규정의 개정
  2. 연구소의 해산
-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정책
 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3. 임원 및 연구원 선출
  4. 예산 및 결산
 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각종위원회)** 연구소의 전문분야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## 제5장 운영 및 재정

**제11조(재정)** ① 본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②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12조(채원사용)** 재원은 학술지 발간, 학술발표회 개최 및 자료 보급, 출판경비,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며, 특별한 경우 연구소 관련 주요행사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고 및 서류의 비치 등

**제13조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(개정 2015.9.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**제14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)**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
2. 연구센터 조직 및 소속 연구원의 명부
3. 회계 관계 서류
4. 연구 기자재를 포함한 재산목록
5. 연구과제 목록

**제15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본 연구소의 임원이나 연구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6조(재산의 귀속)**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.

## 제 7 장 보 칙

**제17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9.1)

제18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9.1)

## 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